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8건)

거 창 군

--- 목 차 ---

연번	의안명	담당부서	쪽수
25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행정과	1
26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7
27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8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9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31
30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과	35
31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39
32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행복농촌과	43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6-2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이고 충실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및 상호존중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실무자문회의를 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등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를 정함(안 제6조·제7조)
- 라. 거짓신고, 실태조사,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정함(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 2)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5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1. 27.~2.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거창군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과 거창군 출자·출연기관 등에 파견된 군 소속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과의 행위를 포함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채용·승진·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

바.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

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제5조(실무자문회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사 중 또는 조사 이후 조치와 관련한 결정 등

② 실무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7조(신고자 등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군수는 신고자·피해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조사에 협조한 사람 등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고나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피해자 심리상담, 실태조사, 예방 교육, 회의 수당 등

나. 관련 조문

- 1) 실무자문회의(안 제5조)
- 2)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안 제6조)
- 3) 실태조사(안 제9조)
- 4) 예방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

나. 2026년 예산 5백만원

- 1) 실태조사: 1백만원
- 2) 심리상담: 3백만원
- 3) 회의 수당 등: 1백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이재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26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영유아 양육지원금의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전입세대에 지방세를 지원 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증가 지원사업 확대·신설 및 정비함(안 제2조)

- 1) 확대: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기간 6세 미만 ⇒ 8세 미만
- 2) 신설: 전입세대에 지방세 지원
- 3) 그 밖에 세부 지원사업 명확히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6년 1,751백만원 확보, 25백만원(지방세지원분)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1. 28.~2.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과 출산 지원
 - 가. 출산 축하금
 - 나. 임신축하 기념품
 - 다. 임산부의 건강 지원 등
2. 8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지원
 - 가. 양육지원금
 - 나.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 다. 영유아의 건강 지원 등
3. 다자녀 세대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4. 전입세대의 정착 지원
 - 가. 전입정착금
 - 나. 전입 기념을 위한 물품 등 지원
 - 다. 빈집정비 지원
 - 라. 지방세 지원
 - 마. 전입 고등학생·대학생 지원
 - 1) 장학금, 학자금
 - 2) 생활관·기숙사 비용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지원금 및 전입세대 지방세 지원에 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입세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로 한다.

②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로 한다.

③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u></p> <p>제2조(인구증가 지원사업) ① 거창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u>임신과 출산 지원</u></p> <p>가. 출산 축하금</p> <p>나. 임신축하 기념품 등</p> <p>2. <u>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지원</u> : 양육지원금 지원 등</p> <p>3. <u>둘 이상 자녀를 둔 세대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u></p> <p>4. <u>전입세대의 정착 지원</u></p> <p>가. 전입정착금</p> <p>나. 빈집정비 지원</p> <p>다. 전입 고등학생·대학생 장학금·학자금, 대학생 생활관비 등 지원</p> <p>5. 그 밖에 군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p> <p>가. 국적취득자 지원</p> <p>나. 거창에서 살아보기 지원 등</p> <p>② 제1항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대상·금액 등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조례</u></p> <p>제2조(인구증가 지원사업) ① 거창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u>임신과 출산 지원</u></p> <p>가. 출산 축하금</p> <p>나. 임신축하 기념품</p> <p>다. 임신부의 건강 지원 등</p> <p>2. <u>8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지원</u></p> <p>가. 양육지원금</p> <p>나.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p> <p>다. 영유아의 건강 지원 등</p> <p>3. <u>다자녀 세대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u></p> <p>4. <u>전입세대의 정착 지원</u></p> <p>가. 전입정착금</p> <p>나. 전입 기념을 위한 물품 등 지원</p> <p>다. 빈집정비 지원</p> <p><u>라. 지방세 지원</u></p> <p>마. 전입 고등학생·대학생 지원</p> <p>1) 장학금, 학자금</p> <p>2) 생활관·기숙사 비용 등</p> <p>5. 그 밖에 군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p> <p>가. 국적취득자 지원</p> <p>나. 거창에서 살아보기 지원 등</p> <p>② 제1항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대상·금액 등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인구증가 지원사업 지원금 확대

나. 관련 조문: 인구증가 지원사업(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세출	1차 연도 (2026년)	2차 연도 (2027년)	3차 연도 (2028년)	4차 연도 (2029년)	5차 연도 (2030년)
합계	1,776	2,392	4,191	5,990	7,375
출산축하금	910	910	1,690	2,470	3,250
양육지원금	841	1,432	2,451	3,470	4,075
전입세대 지방세 지원	25	50	50	50	5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출산축하금

가. 0세 200만원, 1세~6세 해마다 300만원

나. 반기 출생아 평균 130명 기준

연도	합계	개정 전 계속지원	신규(0세), 2백만원	연차(1~6세), 3백만원
1차 연도 (2026년)	910 백만원	'25년 하반기 출생아 130명×5백만원=650백만원	'26년 상반기 출생아(0세) 130명×2백만원=260백만원	-
2차 연도 (2027년)	910 백만원	-	'26년 하반기 출생아(0세), '27년 상반기 출생아(0세) 260명×2백만원=520백만원	'26년 상반기 출생아(1세) 130명×3백만원=390백만원
3차 연도 (2028년)	1,690 백만원	-	'27년 하반기 출생아(0세), '28년 상반기 출생아(0세) 260명×2백만원=520백만원	'26년 상반기 출생아(2세), '26년 하반기 출생아(1세), '27년 상반기 출생아(1세) 390명×3백만원=1,170백만원
4차 연도 (2029년)	2,470백만원	-	'28년 하반기 출생아(0세) '29년 상반기 출생아(0세)	'26년 상반기 출생아(3세) '26년 하반기 출생아(2세)

			260명×2백만원=520백만원	'27년 상반기 출생아(2세) '27년 하반기 출생아(1세) '28년 상반기 출생아(1세) 650명×3백만원=1,950백만원
5차 연도 (2030년)	3,250백만원	-	'29년 하반기 출생아(0세) '30년 상반기 출생아(0세) 260명 ×2백만원=520만원	'26년 상반기 출생아(4세) '26년 하반기 출생아(3세) '27년 상반기 출생아(3세) '27년 하반기 출생아(2세) '28년 상반기 출생아(2세) '28년 하반기 출생아(1세) '29년 상반기 출생아(1세) 910명×3백만원=2,730백만원

2. 양육지원금

가. 월 1회, 첫째 30만원 60개월, 둘째 이후 35만원 84개월

나. 1년 출생아 총수 260명 기준: 첫째 122명 둘째 138명

연도	합계	개정 전 계속지원	첫째 (출생1년후부터/60개월30만원)	둘째 이후 (출생1년후부터/84개월35만원)
1차 연도 (2026년)	841 백만원	'25년 출생아 첫째둘째 (20개월째) :178명×30만원×8개월 = 427백만원 '22년 이후 출생아 셋째이후 (60개월째) 115명×30만원×12개월 = 414백만원	-	-
2차 연도 (2027년)	1,432 백만원	'28년 이후 출생아 셋째이후 (60개월째) 115명×30만원×12개월 = 414백만원	'26년 출생아(12개월) 122명×30만원×12개월 =439백만원	('26년 출생아)(12개월) 138명×35만원×12개월 =579백만원
3차 연도 (2028년)	2,451 백만원	'24년 이후 출생아 셋째이후 (60개월째) 115명×30만원×12개월 = 414백만원	'26년 출생아(24개월) 122명 '27년 출생아(12개월) 122명 244명×30만원×12개월 = 878백만원	'26년 출생아(24개월) 138명 +'27년 출생아(12개월) 138명 276명×35만원×12개월 =1,159백만원
4차 연도 (2029년)	3,470 백만원	'25년 출생아 셋째이후 (60개월째) 115명×30만원×12개월 = 414백만원	'26년 출생아(36개월) 122명 '27년 출생아(24개월) 122명 '28년 출생아(12개월) 122명 366명×30만원×12개월 =1,317백만원	'26년 출생아(36개월) 138명 '27년 출생아(24개월) 138명 '28년 출생아(12개월) 138명 414명×35만원×12개월 =1,739백만원
5차 연도 (2030년)	4,075 백만원	-	'26년 출생아(48개월) 122명 '27년 출생아(36개월) 122명 '28년 출생아(24개월) 122명 '29년 출생아(12개월) 122명 488명×30만원×12개월 = 1,757백만원	'26년 출생아(48개월) 138명 '27년 출생아(36개월) 138명 '28년 출생아(24개월) 138명 '29년 출생아(12개월) 138명 552명×35만원×12개월 = 2,318백만원

3. 전입세대 지방세 지원

연도	합계	주민세	재산세
1차 연도 (2026년)	25백만원	'26년 전입세대(1회)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26년 전입세대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2차 연도 (2027년)	50백만원	'26년 전입세대(2회)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27년 전입세대(1회)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26년 전입세대(2회)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27년 전입세대(1회)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3차 연도 (2028년)	50백만원	'27년 전입세대(2회)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28년 전입세대(1회)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27년 전입세대(2회)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28년 전입세대(1회)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4차 연도 (2029년)	50백만원	'28년 전입세대(2회)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29년 전입세대(1회)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28년 전입세대(2회)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29년 전입세대(1회)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5차 연도 (2030년)	50백만원	'29년 전입세대(2회)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30년 전입세대(1회) 909명 × 11천원 = 10백만원	'29년 전입세대(2회)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30년 전입세대(1회) 214명 × 70천원 = 15백만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2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의 청년이 결혼하도록 북돋우고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결혼장려금 제도를 확대·보완하는 등 청년이 거창군에 거주·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치법규 입안원칙,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정비함(안 제6조·제10조·제12조·제21조)
- 나. 생활안정 지원사업 변경·확대함(안 제16조의2)
 - 1) 사업명 변경: 결혼축하금 ⇒ 결혼장려금
 - 2) 사업 확대
 - (현행)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추가) 주택 구입비용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6년도 예산 654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1. 28.~2.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10조의3)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청년정책”을 “거창군 청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요사항”을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거창군”을 “제9조에 따른 거창군”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을 “문화예술”로 한다.

제10조의3에 제6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결혼축하금”을 “결혼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을 “주택 구입비용이나”로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장려금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혼축하금 경과조치)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혼인 신고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u>청년정책</u>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u>주요사항</u> <p>가. 정치·경제·사회·복지·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 안정 마.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u>거창군</u>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기본계획이 여성 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p>③ (생략)</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위원: 기획·인구교육·<u>문화관광</u>·복지정책 및 경제 업무부서의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생략)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u>거창군 청년정책</u>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u>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u> <p>가. 정치·경제·사회·복지·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 안정 마.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u>제9조에 따른 거창군</u>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기본계획이 여성 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위원: 기획·인구교육·<u>문화예술</u>·복지정책 및 경제 업무부서의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10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0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p>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 <u>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u> ③·④ (생략)</p>	<p>제12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u>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 부부에게 <u>결혼축하금</u>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청년 노동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일정 기간 후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u>주택</u>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청년에게 예산 범위에서 그 <u>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u>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 부부에게 <u>결혼장려금</u>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청년 노동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일정 기간 후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u>주택 구입비용이나</u>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청년에게 예산 범위에서 그 <u>대출금에 대한 이자</u>를 지원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④ 군수는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년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21조(포상) 군수는 청년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단체 또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p>	<p>④ 군수는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년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삭 제></u></p>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확대, 주택 구입비용 대출이자 지원 신설
 - 나. 관련 조문: 생활안정 지원사업(안 제16조의2)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군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결혼장려금	600,000	800,000	900,000	1,200,000	1,500,000
주택구입 비용 대출 이자지원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총계	654,000	854,000	954,000	1,254,000	1,554,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2030년 기준 결혼장려금 예산 1,500,000천원 정도
 - 가. 지원대상: 관내 19세~45세 청년 신혼부부
 - 나. 세부내역
 - 1) 신혼 1년차: 300,000천원 = 2,000천원×150가구
 - 2) 신혼 2년차: 300,000천원 = 2,000천원×150가구
 - 3) 신혼 3년차: 300,000천원 = 2,000천원×150가구
 - 4) 신혼 4년차: 300,000천원 = 2,000천원×150가구
 - 5) 신혼 5년차: 300,000천원 = 2,000천원×150가구
2. 주택구입비용 대출이자 지원 예산 54,000,000원 정도
 - 가.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 5,000만원의 3%
 - 나. 세부내역: 54,000,000원 = 1,500천원×36명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2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한마음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를 군민에게 무상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군민의 독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서관법」에 따른 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명·제1조·현행 제3조·제8조)
- 나.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를 신설함(안 제8조)
- 다. 시설 현행화,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3조·제4조·제6조·제7조·제10조·제13조)
- 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을 신설함(안 제20조·제21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도서관법」 제29조·제34조·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별표7
 - 2) 「지방자치법」 제161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1. 29.~2.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18조)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을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 제목 “(위치)”를 “(명칭 및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중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설) 도서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2. 열람실
3. 북카페
4. 부대시설 등

제4조제1항 중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조 제목 “(자료대출)”을 “(도서관자료 대출)”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및 본문 중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적·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군수는 제적·폐기 도서(간행물을 포함한다)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거창군민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의 조 제목 “(부속시설 이용)”을 “(부대시설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부속시설 이용을 허가”를 “부대시설 이용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속시설”을 “부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제13조의 조 제목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를 “(이용의 취소 및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속시설의 이용허가”를 “부대시설의 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제1항 중 “「도서관법」”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위촉직 위원: 문화·교육·복지 관련자, 도서관 이용자,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8조에 제6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20조 및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u>설치 및 운영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위치)</u>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6길 11에 둔다.</p> <p><u>제3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다.</p> <p><u>제4조(열람 및 이용시간)</u> ① 도서관의 입관료 및 <u>자료</u>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열람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u>군수</u>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p> <p><u>제6조(자료대출)</u>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p> <p><u>제7조(자료의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u> 대출 열람인이 <u>자료</u>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p>	<p>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u>운영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명칭 및 위치)</u>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6길 11에 둔다.</p> <p><u>제3조(시설)</u> 도서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자료실</u> 2. <u>열람실</u> 3. <u>북카페</u> 4. <u>부대시설 등</u></p> <p><u>제4조(열람 및 이용시간)</u> ① 도서관의 입관료 및 <u>도서관자료</u>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열람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p> <p><u>제6조(도서관자료 대출)</u>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p> <p><u>제7조(도서관자료의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u> 대출 열람인이 <u>도서관자료</u>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파손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p>	<p>제8조(제적·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군수는 제적·폐기 도서(간행물을 포함한다)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거창군민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다.</p>
<p>제10조(부속시설 이용) ① 다목적실과 시청각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u>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u>부속시설 이용을 허가</u>할 수 있다. 1. 독서문화행사 등 도서관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3.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u>부속시설 이용시간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0조(부대시설 이용) ① <u>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u>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u>부대시설 이용을 승인</u>할 수 있다. 1. 독서문화행사 등 도서관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3.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u>부대시설 이용시간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3조(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부속시설의 이용허가</u>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2. <u>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u> 3. <u>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u>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속시설의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p>	<p>제13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부대시설의 이용</u>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2. <u>이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u> 3. <u>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u>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속시설의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1. 도서관 시설의 안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p> <p>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른 거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서관업무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계 및 문화계 전문인사 나. 그 밖에 교육 및 문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 도서관 시설의 안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p> <p>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u>법</u> 제34조에 따른 거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서관업무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u>문화·교육·복지</u> 관련자, <u>도서관 이용자,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u>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p> <p><삭제></p> <p>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p>

현 행	개정안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실이 있는 경우</p> <p>7.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p> <p>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29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함

(현행)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개정)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 경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2. 3.~2.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2.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2.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
- 나. 관련 조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나. 2025년까지 감면 사례 없음

작성자 재무과장 윤 광 식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3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을 대상으로 임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여 거창군의 임업소득 증대 및 산촌으로의 인구 유입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업경영 교육·훈련을 신설함(안 제6조)

- 1) 대상: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
- 2) 내용: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 산림경영 등
- 3) 필요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17조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3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 14.~2.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임업경영 교육·훈련) ① 군수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
2. 산림경영
3. 그 밖에 임업경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 설></p>	<p><u>제6조(임업경영 교육·훈련) ①</u> 군수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u> 2. <u>산림경영</u> 3. <u>그 밖에 임업경영에 관한 사항</u> <p><u>②</u>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임업인 또는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 대상으로 교육·훈련 사업
- 나. 관련 조문: 임업경영 교육·훈련(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2026년 예산 기준
 - 1) 임업대학 운영비용: 30백만원
 - 2) 매년 30백만원 소요

작성자 산림과장 강 신 여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3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내 관람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방문하는 누구나 창포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방문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람차 운영 등을 신설함(안 제19조)
- 나. 관람차 이용제한 등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 2) 「지방자치법」 제29조·제161조
-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23,000천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2. 13.~3.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관람차 운영 등) ① 군수는 관람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창포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차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관람차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편의가 필요한 사람이나 거창군민, 공공 목적 등에 따라 관람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관람차 요금은 제23조를 준용하여 반환한다.

제19조의2(관람차 이용제한 등) ① 군수는 관람차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나 관람차 관계자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관람차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장료등, 관람차 요금 감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9조(관람차 운영 등)</u> ① 군수는 관람차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창포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차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관람차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다.</p> <p>② 군수는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편의가 필요한 사람이나 거창군민, 공공목적 등에 따라 관람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③ 관람차 요금은 제23조를 준용하여 반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9조의2(관람차 이용제한 등)</u> ① 군수는 관람차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나 관람차 관계자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그 밖에 관람차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4조(창포원 활성화 지원) 군수는 창포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창포원을 방문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장료등 감면 2. 거창사랑상품권 등 	<p>제24조(창포원 활성화 지원) 군수는 창포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창포원을 방문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장료등, 관람차 요금 감면 2. 거창사랑상품권 등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관람차 구입 및 인건비

나. 관련 조문: 관람차 운영 등(안 제1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소요예산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예상되는 비용이 일시 1억원 미만

나. 2026년 소요 예산 73,0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군비	73,000	22,000	23,000	24,000	25,000

1) 관람차 구입 50,000천원

2) 관람차 대여 12,000천원

3) 인건비(운전) 11,000천원

작성자 환경과장 신동일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

의안 번호	2026-3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 별바람언덕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과 편의 도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차량입장료, 순환버스 운영, 감면, 반환을 정함(안 제4조~제8조)

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교통통제 등, 위탁을 정함(안 제9조~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56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1. 13.~2. 2.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별바람언덕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 도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별바람언덕”이란 거창군 감악산 일원을 말한다. 이 경우, 행사 및 관람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행사등”이란 별바람언덕에서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 등을 말한다.
3. “순환버스”란 군수가 별바람언덕에 대해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등의 기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차량입장료) 군수는 행사등의 관람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별바람언덕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차량에 대한 입장료(이하 “차량입장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순환버스 운영 등) ① 군수는 별바람언덕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순환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차량입장료 등의 감면) 군수는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차량입장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등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
2. 제1호 이외의 사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상품권 등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별바람언덕 교통통제 등) ① 군수는 행사등 기간 중 별바람언덕 진입로 일원의 교통 혼잡 방지 및 방문객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진입이 제한되는 경우, 방문객은 군수가 지정한 임시 주차장에 주차하고, 순환버스를 이용하여 행사등의 장소(이하 “행사장”이라 한다)로 이동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외에는 진입 통제 지점으로부터 행사장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다.

1. 행사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무용 차량
2. 응급구조, 소방 등 긴급자동차
3. 장애인, 노약자 등 특별한 사유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차량
4. 행사장 진입에 관한 사전 예약을 완료한 차량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행사등 관계 차량

④ 군수는 자가용 차량 진입 제한 및 교통통제를 위해 필요한 교통통제 시설물 및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운영) 군수는 별바람언덕의 차량입장료, 순환버스 이용료,

교통통제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 기준

가. 차량입장료

(단위: 원)

구분	차량입장료	차량기준	비고
소형차 1대	6,000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차량 주차는 예약 자에 한정함 -예약일에 차량입 장료 납부해야 함
대형차 1대	10,000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나. 순환버스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이용료	비고
1인	3,000	왕복 기준

[별표 2] 차량입장료 및 순환버스 이용료 감면 기준

감면대상	감면율
<p>가.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p>	<p>100분의 100</p>
<p>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자 1명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유공자 등 바. 24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 이 경우 자녀 모두 해당</p>	<p>100분의 50</p>

거창군 별바람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별바람언덕 내 행사 순환버스 운영

나. 관련 조문: 차량입장료(안 제5조), 순환버스 운영(안 제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군비	620,496	620,496	620,496	620,496	620,496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수입	지출	손익
			446,880	620,496	-173,616
순환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7,520천원 - (평일) 3천원×5,400명×12일×70% - (휴일) 3천원×7,200명×12일×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94,160천원 - 628천원×30대×24일=452,160천원 - 매표소 운영 42,000천원 	-176,640	
예약제	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960천원 - 6천원×1,200대×24일×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960천원 - 6천원×1,200대×24일×70% - 수수료300원, 포토카드 2,000원, 배송료3,700원 	0	
	관광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400천원 - 10천원×50대×24일×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76천원 - 6,400원×50대×24일×70% - 수수료700원, 포토카드 2,000원, 배송료3,700원 	3,024	

작성자 행복농촌과장 조경자